

인도·사회문화분야 남북합의서

2015

통 일 부



I. 주요 합의서

1. 남북기본합의서

-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91.12.13) 3
- 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92.9.17) 8

2. 남북정상회담

- 1) 남북공동선언(00.6.15) 19
- 2)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07.10.4) 21

3. 남북총리회담

- 1)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07.11.16) 26

4. 남북장관급회담

- 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0.7.31) 37
- 2)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0.9.1) 39
- 3)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0.9.30) 41
- 4)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0.12.16) 43
- 5)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1.9.18) 45
- 6)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02.8.4) 48
- 7)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2.8.14) 50
- 8)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2.10.22) 53
- 9)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3.1.24) 55

10)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3.4.29)	56
11)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3.7.12)	58
12)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3.10.17)	60
1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4.2.6)	61
14)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4.5.7)	63
15)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5.6.23)	64
16)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5.9.16)	67
17)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5.12.16)	70
18)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6.4.24)	73
19)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7.3.2)	75
20)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07.6.1)	78

5. 남북고위급접촉

1) 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14.2.14)	79
----------------------------------	----

6. 특사 방문

1)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00.9.14)	80
2) 임동원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02.4.5)	82

II. 인도분야 합의서

1. 남북 적십자회담

1)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00. 6.30)	87
2)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00.9.23)	90
3)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01.1.31)	93
4)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02.9.8)	95
5)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02.12.17)	98
6)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03.1.22)	99
7)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위한 합의서」('03.11.6)	102

- 8) 제1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실무접촉 :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
(05.7.19) 105
- 9)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05.8.25) 108
- 10) 제2·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실무접촉 :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
(05.10.7) 109
- 11)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06.2.23) 111
- 12)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06.6.21) 113
- 13) 제6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07.3.10) 121
- 14)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07.4.13) 122
- 15)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07.11.30) 124
- 16)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08.2.5) .. 126
- 17)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09.8.28) 129
- 18)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10.10.1) 130
- 19)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13.8.23) 132
- 20)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14.2.5) 134

2. 남북 인도지원·환경 회담

- 1)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07.12.18) 136
- 2)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회의
(07.12.21) 137

Ⅲ. 사회문화 분야 합의서

1. 남북 체육회담

- 1)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선수단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02.8.28) 143
- 2)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참가 관련 실무접촉
합의서(03.7.6) 146

- 3) 아테네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에 관한 합의서」(04.6.24) 149
- 4)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절차 합의서(05.7.28) ... 150
- 5)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공동보도문
(06.6.29) 152
- 6)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07.12.28) 153
- 7)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제2차 실무접촉 :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08.2.4) 154

2. 남북 공동행사 회담

- 1)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합의서(05.5.28) 156
- 2)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05.7.22) 161
- 3) 남북당국 대표단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06.5.23) 163

3.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 1)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05.9.7) 165
- 2)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05.11.22) 166
- 3)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07.4.10) 167

I. 주요 합의서

1. 남북기본합의서
2. 남북정상회담
3. 남북총리회담
4. 남북장관급회담
5. 남북고위급접촉
6. 특사 방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2. 19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 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 형 목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12.13, 서울)에서 채택

- 남측 : 1992.2.17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이 부서
- 북측 : 당중앙위 제6기 19차 전원회의(1991.12.24)에서 연형목 총리가 보고한후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91.12.26)에서 승인후 김일성 주석이 최종 비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경제교류·협력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

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 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 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 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 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 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9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 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 출판물의 교환 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게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 조치를 취한다.
- ⑧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 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①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 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②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 ③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면회소 설치 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 ④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⑤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흩어진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 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4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 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 실무협의회에서 토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남북 측 대 국 정	북 고 위 대 표 단 한 무 원	급 수 민 총	회 석 대 국 리 식	담 국 리 식
-----------------------------	---	------------------	----------------------------	------------------

북 북 측 대 국 정	남 고 위 대 표 단 무 원	급 수 민 총	회 석 대 국 리 식	담 국 리 식
----------------------------	--------------------------------------	------------------	----------------------------	------------------

※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9.16-18, 평양)에서 합의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국	방	국 방 위 원 장 일
김	대	령	위	김 정
		중	원	
			정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 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 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
대
노

한
통
무

민
국
영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2007년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이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매년 6월 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내년 6.15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의 참가하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양측 의회를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활성화해 나가며 쌍방 당국은 남북국회회담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2조 남과 북은 서해지역의 평화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서해상에서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해상의 일정한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의 대상지역과 범위를 호혜의 정신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여 확정하고 2008년 상반기안으로 공동어로사업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공동어로구역의 효율적 운영과 수산분야에서의 협력문제를 12월중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산하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해주경제특구」)을 건설하고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점차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게 활용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며 2008년 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⑦ 남과 북은 한강하구에서 2008년안으로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실무접촉과 현지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⑧ 남과 북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관련한 항로대 설정, 통항절차 등의 문제를 12월중에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의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⑨ 남과 북은 「해주경제특구」 건설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⑩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⑪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12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1) 도로 및 철도분야 협력

① 남과 북은 경의선 도로와 철도의 공동이용과 물류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현지조사를 금년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 이용을 위한 철길보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의 개보수와 공동이용에 필요한 설계, 설비, 자재, 인력 등을 적기에 보장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도로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철도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2) 조선협력단지 건설

- ① 남과 북은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 건설을 2008년 상반기 안에 착수하며 단계적으로 선박 건조능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 등을 가까운 시일안에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 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따라 안변과 남포 지역에 대한 출입, 체류, 통신, 통관, 검역, 자금 유통 등 법률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제1차 회의를 12월중에 부산에서 개최하여 조선 협력단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 개성공단 건설

① 남과 북은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금년 12월중에 진행하며 2008년 안에 2단계 건설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로인력을 적기에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숙소건설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한 도로 건설 및 열차운행 문제를 협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금년 12월 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을 시작하며, 이를 위한 판문역 임시 컨테이너 야적장과 화물작업장 건설, 신호·통신·전력체계 및 철도연결구간 마감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문산-봉동간 화물열차운행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실무접촉을 개최하고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부속서」를 채택하며,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0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통행절차를 개선하고,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금년내에 착공하며, 통관사업의 신속성과 과학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자하차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⑦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며, 통행·통신·통관 문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⑧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 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단천지구광산 투자 등 지하 자원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제3차 현지조사를 12월 중에 진행하며 2008년 상반기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건설 등을 금년중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쌍방이 관심하는 수역에서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⑥ 남과 북은 지하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수산,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위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들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

-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총리회담 산하에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조 남과 북은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역사 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공동문화 행사, 과학기술인력양성,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 지원,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 공동응원을 비롯한 사회문화협력 사업들을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백두산과 개성관광사업이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며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12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2008년 상반기중에 개최하고, 기상정보교환과 관측장비

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을 금년 12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인도주의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2월 7일 금강산면회소의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며 2008년 새해를 맞으며 흠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흠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확대 및 상시상봉, 쌍방 대표들의 금강산면회소 상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제6조 남과 북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 통보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며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피해복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제7조 남과 북은 남북총리회담을 6개월에 1회 진행하며, 제2차 회담을 2008년 상반기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8조 수정 및 발효

- ①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 수정·보충할 수 있다.
- ②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16일

남북총리회담
남측 대표국리수
북측 총수 한무덕
리석민총
회대

북남총리회담
북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리일
남측 각총
영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7월 29일부터 31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평양 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공동 선언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당면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한다.

첫째, 남북장관급회담은 쌍방 정상들이 서명한 공동 선언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이행문제를 협의·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둘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불신과 논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쉬운 문제부터 해결하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셋째, 남북장관급회담은 민족 앞에 실질적인 결실을 내놓을 수 있도록 실천을 중시하며,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아가는 대화가 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1996년 11월에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를 2000년 8·15를 계기로 재개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총련 동포들이 방문단을 구성하여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 남과 북은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을 연결하며, 이를 위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8월 29부터 8월 31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0년 7월 31일

서울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중대한 의의를 다시금 강조하고, 그것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 안에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사업을 두차례 더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는 남북 적십자 단체들이 곧 토의하며 이와 함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서신교환을 추진하는 등의 문제들을 협의한다.
2. 남과 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도록 협의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쌍방 전문가들의 실무접촉을 9월중에 가진다. 그리고 남측은 북측이 연이어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실정에서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북측에 식량을 차관으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추진한다.

4.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를 연결하며 문산-개성사이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9월 중에 가지고 착공식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6. 남과 북은 백두산, 한라산 관광단을 각기 100명 정도의 규모로 하여 오는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사이에 상대측 지역에 보낸다.
7. 남과 북은 제 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한라산에서 개최한다. 장관급회담 대표단의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2000년 9월 1일

평 양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후 합의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변함 없이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미 여러 갈래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문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앞으로의 실천적인 사업들을 계속 폭넓고 깊이 있게 협의하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쌍방 적십자 단체들이 제2차 회담에서 합의한 문제들과 함께 금년 말부터 생사확인,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실무접촉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평가하고 투자보장과 이종과세방지 문제와 함께 분쟁 해결절차와 청산결제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협의·설치한다.
5. 남과 북은 학술문화체육 등 제반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바탕위에서 남측은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며 정기적으로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문제와 시범적으로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등의 방문단을 상호 교환하는 문제를 제의하였고, 북측도 위의 제안을 포함하여 교류 협력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협의·결정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2000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3박 4일간 개최하기로 한다.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2000년 9월 30일

제 주 도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0년 12월 12일부터 16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지난 6개월 동안의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고 2001년을 맞으며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한다.

이 위원회는 각기 차관(부상)급을 수석대표(단장)로 하여 5~7명으로 구성하며, 2000년 12월 26일경에 첫 접촉을 평양에서 하되 여기에서는 전력협력 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 연결 문제, 개성공업단지 건설 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 한다.

2. 남과 북은 어업부문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측이 남측에 동해 북측 어장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공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쌍방 당국의 관계자들이 빠른 시일안에 금강산 지역에서 접촉을 가지고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 태권도 단체들 사이의 접촉을 권고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과 서신 교환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되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월과 2월에 각각 100명씩, 서신교환은 2001년 3월에 300명 정도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에 100명씩 한다.
6. 북측은 한라산관광단은 2001년 3월, 경제시찰단은 2001년 상반기에 파견한다.
7. 남과 북은 쌍방 수석대표(단장)들이 서명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각기 발효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상대측에 통보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3월중에 개최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0년 12월 16일

평 양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1년 9월 15일부터 18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려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급에서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상호 이해와 존중의 바탕 위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쌍방사이에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되는 데 따라 연결공사에 곧 착수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기로 한다.

-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고 공단의 규모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공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0월 4일 당국간 회담을 열고, 육로 관광을 비롯한 금강산 관광활성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남과 북, 러시아 사이의 철도연결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가스관의 연결 사업도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 ⑤ 남과 북은 평화적인 민간선박들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운 관계자들 사이의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로 한다.
- ⑥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협의한 바탕 위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데로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 ⑦ 남과 북은 이미 서명 교환한 남북경제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보호, 이중

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기로 한다.

⑧ 남과 북은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자들 사이의 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가지기로 한다.

⑨ 남과 북은 이상의 경제실무적 문제들의 구체적인 이행대책들을 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 해당부문 접촉들에서 협의해 나가며 제2차 경제협력추진 위원회를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을 교환하기로 하고, 북측 시범단을 10월에, 남측 시범단을 11월에 각기 상대측 지역에 파견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관계자들 사이에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하기로 한다.

2001년 9월 18일

서 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준비를 위한 쌍방 실무대표 접촉이 2002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다.

접촉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순차에 따라 서울에서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을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다음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 ① 이미 합의한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제협력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문제,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 회담 개최문제, 북측 경제시찰단 파견 문제,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4.5 공동보도문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확정 문제

②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며,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4. 쌍방은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에 북측이 참가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편의를 보장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민간급에서 진행되는 「8.15 서울 민족통일 대회」와 9월 축구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돕기로 하였다.

2002년 8월 4일
금강산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해 나갈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4.5 공동보도문과 그밖의 상호 관심사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

여기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문제, 개성공단 건설문제, 임진강 수해방지문제와 그 밖의 경제협력문제들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남북이 동시에 병행시켜 착공하기로 하되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시급히 취하며, 쌍방 군사당국자간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안변청년발전소 임남댐 공동조사를 위한 관계 실무자들의 접촉을 9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상봉단의 규모와 상봉절차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의 관례에 따르며 구체적인 문제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한다. 아울러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적십자단체의 책임자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을 9월 4일부터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며, 이 때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 등을 협의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 회담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북측의 제14회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백두산 성화 운반 등 제반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8월 17일부터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조선올림픽위원회간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7. 남과 북은 남북축구경기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태권도 시범단 교환을 추진하기로 하며 남측 시범단이 9월 중순에 평양을, 북측 시범단이 10월 하순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계 단체들간의 실무적 협의를 주선하기로 한다.

9. 북측 경제시찰단이 10월 하순에 남측 지역을 방문한다.
10.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2002년 8월 14일
서 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2년 10월 19일부터 22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해결 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건설이 동시에 빨리 진척 되도록 남북장관급회담이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1차적으로 경의선 철도·도로를 개성공업 단지에, 동해선 철도·도로를 금강산 지역에 연결한다.

쌍방은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빨리 추진하며, 남측은 강릉방향으로의 남측구간 연결공사를 중단 없이 빨리 추진시킨다.

3.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착공을 12월중에 하는 문제와 건설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개성공단 건설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하며, 개성공단이 건설되면 그 안에 남측의 해당부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민간선박들의 상대측 영해통과와 안전운항 등 해운협력에 관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관계자 실무접촉을 11월중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의 인원통행 및 물자수송에 관한 통행합의서 채택 문제를 남북철도·도로가 처음 연결되는 시기에 맞추어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어민들이 북측의 동해어장의 일부를 이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면회소를 빨리 건설하고,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주소를 확인하는 적십자단체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 주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한다.

2002년 10월 22일

평 양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
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24일

서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상호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준수하며 계속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정례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오는 8월에 대구에서 열리는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사이에 이미 합의하여 이행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 문제,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며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4월 29일

평양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상호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진행중인 경제협력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03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12일

서 울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남과 북은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2003년 11월 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7일

평양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2월 3일부터 6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의 번영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제반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2차 6자 회담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 군사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9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4년 3월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4년 2월 6일
서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4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쌍방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으며, 그 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5월 7일

평 양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 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5년 동안 남북사이에 이룩된 성과를 평가하고,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8.15 남북공동 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여 분위기가 마련되는 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금강산 상봉을 8월 26일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 조사를 7월 중으로 끝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중에 개최하여 전쟁 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개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당면하여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침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앞으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 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서해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산하에 수산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 중으로 개최하여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10.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을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다.

11.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오는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12. 남과 북은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12월중에 남측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6월 23일
서울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과 8.15 서울 민족대축전이 당국 대표단의 참가하에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평가하면서 그 토대위에서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실천적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남북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도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당면하게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낡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6.15시대에 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사이의 경제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동족 사이의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임진강수해 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와 관련 실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11월 초에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올해안으로 2차례의 화상상봉을 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9월 16일

평양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5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올해의 남북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새해 2006년에는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과 의지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 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핵 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이며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 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과 업종, 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등을 조속히 추진시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6년 2월 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06년 2월말 경에 제4차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실시하며, 3월말 경에는 제13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9.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5년 12월 16일
제 주 도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6년 4월 21일부터 24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룩한 성과들을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 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측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에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 건설사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6년 4월 24일

평양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 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 사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 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①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
- ② 쌍방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접촉을 가지기로 하였다.
- ③ 쌍방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 2일

평 양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지난 20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룩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부합되게 보다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칙적이며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제기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더 연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6월 1일

서울

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4년 2월 12일과 14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증상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 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2014년 2월 14일

서 울

김용순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가 2000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다.

남과 북은 이번 방문기간 여러 차례 접촉을 가지고 현재 남북간에 제기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두 분 정상들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대해서 환영하였다.
3.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 및 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치기로 하였으며, 이들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을 교환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을 9.20 금강산에서 개최하여 위 문제와 함께 올해 2차례의 이산가족 방문단 추가 교환 문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키로 하였다.

4.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9.25 서울에서 개최하며, 빠른 시일 내 이를 타결키로 하였다.
5. 남북간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기공식을 개최키로 하였다.
6. 북측은 15명 정도 규모의 경제시찰단을 10월중 남측에 파견키로 하였다.
7.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금년 내 남북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키로 하였다.

2000년 9월 14일

임동원 특사 방문 공동보도문

남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인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임동원 특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체류기간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용순 비서 사이에 회담이 있었다.

이 과정에 쌍방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 정세와 민족 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긴장상태가 조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에 따라 그 동안 일시 동결되었던 남북관계를 원상회복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남북사이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동부에서 새로 동해선 철도 및 도로를, 서부에서 서울-신의주 사이의 철도 및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빨리 연결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 방지 대책 등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래 실무협의회들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 ②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사이의 회담을 6월 11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을 4월 28일부터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북측은 이미 합의한 경제시찰단을 5월중에 남측에 보내기로 하였다.
 - ⑤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고 진척되는 데 따라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6. 쌍방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2년 4월 5일

평 양

Ⅱ. 인도분야 합의서

1. 남북 적십자회담
2. 남북 인도지원·환경 회담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

남북적십자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2000년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올해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및 비전향장기수 송환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 ① 이산가족방문단은 2000년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3박4일)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은 책임자 1명, 이산가족 100명, 지원인원 30명, 취재기자 20명으로 구성하며, 방문단 책임자는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③ 방문단의 방문지는 서울과 평양으로 한다.
- ④ 쌍방은 방문단 후보자 명단을 방문 30일전에 각기 200명씩 교환하며, 그 중 생사소재를 확인한 후 확정된 방문자 명단을 방문 20일전에 통보한다.
- ⑤ 쌍방은 지원인원, 취재기자를 포함한 방문단 최종 명단을 방문 7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⑥ 방문단 교환 절차는 1985년 방문단 교환 관례에 따르며, 교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2.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한다.
- ②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회담을 열고 협의·확정한다.

3. 비전향장기수 송환

- ①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한다.
- ②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실태자료를 송환 15일전에 북측에 통보한다.
- ③ 북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명단을 넘겨받은 다음 확인한데 따라 송환 10일전에 남측에 명단을 통보한다.
- ④ 비전향장기수 송환 절차는 1993년의 관례에 따르며, 송환 경로는 육로 또는 항공로로 한다.

4.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6월 30일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당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박기륜

「북남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북남적십자회담당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최승철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

- 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 3일간씩 동시 교환한다.
- ②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 방문단 교환 시의 전례를 따른다.

2. 생사주소확인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 ② 쌍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③ 명단 및 결과통보 양식은 8.15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르되, 명단에는 신청자의 현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 통보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사망시) 등을 포함한다.

3. 서신 교환

- 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 데 따라 그들 사이의 서신교환을 진행한다.
- ② 쌍방은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 문제는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한다.

4.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쌍방은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절차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5.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 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6.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0년 9월 23일

남북 적십자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박기륜

북남 적십자회담
북측 대표단
장최승철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은 2001년 1월 29일부터 31일 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을 서울과 평양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2박 3일) 동시에 교환한다.

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제1·2차 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제3차 방문단 교환을 위해 1월 31일 교환한 방문 후보자 명단에 대한 회보서는 2월 15일에 교환하며, 최종 방문단 명단은 2월 17일에 교환한다.

2.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산가족들의 서신교환은 3월 15일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통해 실시한다.

이때 교환되는 서신은 편지로 하고, 1~2매의 가족 사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3. 2월중 실시하기로 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대상자(각기 100명)명단은 2월 9일에 교환하며, 그 결과에 대한 통보는 2월 23일에 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그 구체적 사항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들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6.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은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하며, 장소는 추후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2001년 1월 31일

금 강 산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의 적십자사 책임자들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이 2002년 9월 6일부터 8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회담에서 민족의 염원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기 위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면회소 설치문제

- ① 쌍방은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운영한다.
- ② 쌍방은 우선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 지역에 설치하며 앞으로 경의선 철도·도로가 연결되면 추가로 서부지역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확정한다.
- ③ 금강산지역에 설치하는 면회소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자재와 장비는 남측이, 공사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 ④ 금강산지역 면회소 건설 착공일자는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을 빨리 진척시키고 필요한 자재들을 선행하여 보장하는 기초위에서 정한다. 착공식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 ⑤ 금강산지역 면회소 완공 후에는 면회를 정례화한다.

2.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문제

쌍방은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사업을 계속 확대추진해 나가며, 규모·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앞으로 협의한다.

3.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 4. 쌍방은 면회소 설치·운영 등 본회담 합의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10월 중순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제5차 이산가족상봉문제

- ① 쌍방은 제5차 이산가족 상봉을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여 9월13일부터 18일 사이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 ② 이에 따른 실무절차문제는 제4차 이산가족 상봉 때의 전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9월 8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적십자사
총재 서영훈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중앙재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2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금강산에서 제2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이번 접촉에서 남과 북은 금강산면회소 장소, 설계 문제와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음력 설을 계기로 한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면회소 규모,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및 서신 교환 확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차기 접촉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금번 접촉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2003년 1월 중 제3차 실무접촉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2년 12월 17일
금 강 산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협의를 위해 2003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운영

- ① 금강산지역 이산가족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한다) 설치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앞 구역으로 한다.
- ② 면회소는 면회장, 객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센터 형식의 건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되 연건평 규모는 쌍방 건설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확정한다.
- ③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자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 ④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설계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 ⑤ 면회소 건설은 1년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며, 착공식은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이 진척되고 자재, 장비들이 들어오는 데 따라 4월중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⑥ 쌍방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각기 10명 정도씩의 관계자들로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의 첫 접촉을 2월 10일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⑦ 면회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면회소가 완공되기 1개월전까지 확정한다.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① 남과 북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6차 상봉의 규모, 절차 등 실무적 문제는 지난 시기의 전례를 따른다.

③ 남과 북은 면회소가 완공되기 이전에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문제 등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효력 발생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월 22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남측측대표이병
수석대표이병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북측측대표이병
단장리금단철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면회소 건설을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03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함) 건설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면회소를 착공 후 1년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한다. 면회소 건설 부지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한다.

면회소건물의 연건축 면적은 6,000평(20,000㎡)으로 하되, 앞으로 필요에 따라 증축할 수 있다.

2. 남측은 면회소 건설을 전담하며, 계획(형성)설계는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를 보장하며, 그 비용은 남측이 지불한다.

3. 북측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 등을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하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자재·장비에 대한 반출입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면회소 설계·시공·완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각기 자기측 해당 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한다.

5. 면회소건설 착공식은 부지 지질조사와 실시(기본)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한다.

착공식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는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한다.

6. 남측은 면회소의 완공 후 관리·운영을 전담한다.
7. 남과 북은 면회소 내에 각기 300평(1,000㎡) 규모의 면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면회 운영문제 등을 협의하고, 시설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은 남북 면회사무소간 상호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북측 면회사무소의 건설은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은 면회사무소에서 개최한다.

8. 면회소는 금강산관광사업 등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다.
9. 남과 북은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를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며,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를 마련한다.

10.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1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1월 6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이병웅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최성익

※ 금강산면회소 건설 제2차 당국간 접촉('03.10.23-25)에서 가서명한 후,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03.11.4-6)에서 합의서 채택

〈제1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실무접촉〉

남북 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5년 7월 12일부터 13일 까지 개성에서 올해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광복 60주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에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시범화상상봉 규모를 각기 20명씩으로 하며, 1명의 상봉자가 만나는 상대측의 가족·친척은 5명 정도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후보자를 쌍방 각기 100명씩 정하고 후보자 명단은 7월 18일에, 회보서는 7월 27일에, 최종명단은 8월 2일에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시범화상상봉을 당일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기술적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인원 1명이 상봉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다.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서울-평양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운영한다.

6. 남과 북은 화상상봉의 기술적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기로 한다.

① 남측은 7월 18일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을 연결한다.

② 남과 북은 각기 10가족이 동시에 상봉할 수 있는 화상 상봉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하되 7월 20일전으로 각각 완료하며 7월 25일전으로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 연장시험을 진행한다.

③ 남과 북은 남북 SDH 전송로가 확인된 후 서울-평양간 이더넷망(IP망)연결시험을 7월 30일전으로 진행한다.

④ 남과 북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단말기 연결시험을 진행한다.

⑤ 총연결시험이 완료된 후 남과 북은 8월 6일부터 14일 까지 남북 화상상봉을 위한 화상단말기 운용방법을 완성한다.

7. 남과 북은 8.15 시범화상상봉의 경험에 기초하여 제6차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더

확대해 나가는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7월 19일

남북적십자 남측대표 수석대표	실무접촉 대표 정승훈	북남적십자 북측대표 단장황	실무접촉 대표 단철
-----------------------	-------------------	----------------------	------------------

※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종료후 합의서 서명본 교환 (*05.7.19)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의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5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였다.

쌍방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며, 일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8월 25일

금 강 산

〈제2·3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실무접촉〉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5년 10월 5일과 7일 개성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올해에 두 차례의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되 제1차 화상상봉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2차 화상상봉은 12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진행한다.
2.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규모를 가족 대 가족 상봉 원칙에서 남북 각기 40가족씩 정하며, 1가족당 상봉 참가자 수는 2~5명 정도로 한다.
3. 제1차 화상상봉은 시범화상상봉 때에 생사가 확인되었지만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대상들로 하고 그 최종 명단은 11월 16일에 교환하며, 제2차 화상상봉 후보자는 쌍방 각기 120명씩으로 정하고 그 후보자 명단은 10월 21일에, 회보서는 11월 14일에, 최종 명단은 11월 16일에 판문점을 통하여 교환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시간을 시범화상상봉 때와 같이 정하며 가족별 상봉순서는 최종명단을 교환할 때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상봉에 참가하는 가족 명단은 성명, 성별, 나이, 가족 및 친척관계를 밝힌다.

5.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참가하는 대상들에 한하여 화상상봉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6. 쌍방은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서울-평양 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운영한다.
7. 쌍방은 상봉시작 7일전에 화상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시험통화를 진행하며 시험통화 시간은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8. 기타 화상상봉과 관련한 실무적 절차와 관리운영 방법에 따르는 기술적 보장 문제는 시범화상상봉시의 전례에 따른다.
9. 남측은 북측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용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다.
10.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0월 7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대표 정승훈
수석대표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대표 단장황철

※ 제3차(10.7)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6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7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지고 남북간 화해협력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맞게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북이 각각 200명씩으로 한다.
2. 쌍방은 6.15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특별 화상 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북이 각각 60가족씩으로 한다.
3. 쌍방은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
4. 쌍방은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해나가기로 한다.
5. 남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는 데 필요한 설비자재 등을 북측에 제공하며, 이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3월중에 가진다.

6.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는 6월경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2월 23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남 북 적 십 자 회 담
수 석 대 표 장 석 준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단 장 최 성 익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

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데 따라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이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주소확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차량(버스 10대, 승용차 6대)과 일부 물품의 구입비용으로 40만 US\$를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2. 남측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북측지역에 설치하는 화상상봉센터 건설에 필요되는 별첨의 설비자재들을 빠른 시일내에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3.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차량, 물품구입 비용, 설비자재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남측에 통보하며, 남측 인원의 화상상봉센터 현장방문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위와 같은 사항들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년 6월 21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대표단장 황정주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대표단장 박용일

※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제5차 적십자실무접촉, '06.3.17~22)에서 협의하였으나 미합의

- 추후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서 채택('06.6.21)

〈별첨〉

설비자재명세

1. 전기 및 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발전기	비상150KW	대	2	기름탱크 포함
2	저압배전함	메인225A+ 분기100A * 5	면	2	
3	사각직부그로브형광등	FL 18W * 4	개	60	사각매입그로 부형광등
4	원형직부그로브등	FL32W	개	20	FCL 32W
5	매입개방형광등	FL 32W * 2	개	90	
6	음폐직부등	FL 18W * 2	개	10	매입개방형광등
7	직부갓형 형광등	FL 32W * 2	개	100	FL32W * 2
8	MH다이아몬드투광등	400W	개	70	할로겐등 150W * 1
9	다운라이트	φ 125	개	30	
10	다운라이트	φ 100	개	10	
11	거울등기구	32W * 1	개	8	
12	거울등기구	18W * 1	개	10	
13	살균등기구	30W * 1	개	3	
14	장식벽등		개	10	
15	장식벽등	60W * 1	개	5	
16	비상구유도등	40W * 1	개	12	
17	매입 텀블러 스위치	1로1구	개	60	1로 1구
18	매입 텀블러 스위치	1로2구	개	60	1로 2구
19	매입 텀블러 스위치	3로3구	개	10	1로 3구
20	매입 텀블러 스위치	3로3구	개	10	
21	콘센트	접지형	개	150	구멍형
22	전화 플레이트	4 PIN 타입	개	60	
23	MCCB	3P600AF/600AT	개	3	
24	MCCB	3P225AF/150AT	개	3	
25	MCCB	3P100AF/100AT	개	4	
26	MCCB	3P 100AF/60AT	개	10	
27	MCCB	3P 50AF/40AT	개	15	
28	MCCB	3P 30AF/20AT	개	30	
29	전자개폐기	380V, 70KW	개	5	
30	CVCF(전압주파수변환기)	1.5KW	개	30	

1. 남북 적십자회담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31	UPS(무정전 전원장치)	1KW, 30분	개	30	
32	전자개폐기	380V, 40KW	개	5	
33	전화단자함	25V, SUB	개	2	
34	전력케이블(CV)	4C/100SQ	M	200	
35	전력케이블(CV)	4C/101SQ	M	200	4C/60SQ
36	전력케이블(CV)	4C/38SQ	M	200	
37	전력케이블(CV)	4C/38SQ	M	200	
38	전력케이블(CV)	4C/22SQ	M	300	
39	전력케이블(CV)	4C/14SQ	M	200	
40	전력케이블(CV)	4C/8SQ	M	200	
41	절연전선(HIV)	14SQ	M	200	
42	절연전선(HIV)	8SQ	M	500	
43	절연전선(HIV)	5.5SQ	M	500	
44	절연전선(HIV)	3.5SQ	M	3,000	
45	절연전선(HIV)	2SQ	M	3,000	
46	통신케이블(CPEV)	20P * 0.65	M	1,000	
47	통신선(UTP)	CAT5 * 4P	M	2,000	
48	조작케이블(DVV)	7C/2.0SQ	M	500	
49	조작케이블(DVV)	5C/2.0SQ	M	500	
50	조작케이블(DVV)	4C/2.0SQ	M	500	
51	조작케이블(DVV)	3C/2.0SQ	M	1,500	
52	내화전선(FR-8)	1C/2.0SQ	M	400	
53	내화전선(FR-8)	2C/2.0SQ	M	2,000	
54	비닐관(HI-PVC)	70C	M	2,000	노말, 카프링 포함
55	비닐관(HI-PVC)	36C	M	300	노말, 카프링 포함
56	비닐관(HI-PVC)	28C	M	6	노말, 카프링 포함
57	비닐관(HI-PVC)	16C	M	180	노말, 카프링 포함
58	비닐전연테이프		개	500	
59	백크라이트판	T=5mm	m'	1,000	
60	CABEL TRAY	W500 * H100	M	400	
61	전산부트	3/8", 1000mm	대	50	
62	스트롱 양가	3/8"	개	50	그립핀찌트 3/8"
63	각종 행거		개	50	70C, 36C, 28C, 16C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64	압착터미널(동관형)	100mm ²	개	50	
65	압착터미널(동관형)	80mm ²	개	50	60mm ²
66	압착터미널(동관형)	38mm ²	개	50	
67	압착터미널(동관형)	38mm ²	개	50	
68	압착터미널(동관형)	22mm ²	개	150	
69	압착터미널(동관형)	14mm ²	개	150	
70	압착터미널(동관형)	8mm ²	개	250	
71	셋트 양가	3/8"	개	200	
72	각종볼트, 너트		개	1,000	
73	용접용		Kg	200	
74	승강기(20층용 1t)	2 * 3m	대	3	

2. 운수기재

구분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굴착기(1.5m ³)		대	2	
2	자동적재 화물차 (10t 미만급)		대	7	

3. 건축자재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	주단바라케트	600 * 600	m ²	250	
2	합판바라케트	두께-15mm	m ²	450	
3	리노륨		m ²	280	
4	타일(바닥)	300 * 300	m ²	200	
5	타일(벽)	250 * 300	m ²	250	
6	인조대리석(바닥)	두께-10mm	m ²	1,200	600 * 600
7	인조대리석(바닥)	두께-10mm	m ²	800	600 * 1150
8	무늬목 걸레반이	H=120	M	930	
9	석고보드		m ²	2,100	
10	테코스톤	코팅	m ²	110	
11	블리스파저	울부직포	m ²	550	
12	욕실용 거울	5T	m ²	20	
13	수성페인트	백색	Kg	200	
14	거울접착테이프		M	50	
15	오닉스 카운터	1,000 * 600 * 120	m ²	25	
16	큐비클		m ²	100	
17	목재문	900 * 2,100	개	86	
18	알루미늄문		m ²	30	

1. 남북 적십자회담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9	M.D.F	30T	m'	70	
20	무늬유리	5T	m'	26	
21	슈트방수	RUBBER	m'	2,300	
22	셀리콘		개	20	
23	시멘트	포장(40Kg)	t	400	
24	아이스핑크	10T	m'	300	
25	인조가죽		m'	50	
26	천연마지		매	300	
27	수사연마지		매	300	
28	그라인트		조	3	
29	햄머드린		조	3	
30	커터칼		개	20	
31	유리칼		개	2	
32	줄자	5.5M	개	10	손쇠줄자
33	목수공구세트		개	2	목수공구함
34	철근	HD10	Kg	8,100	
35	철근	각종	Kg	3,700	

4. 위생·난방기 설비자재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 다중랭온풍기		set	4	
1	Q1 /Q2 =32520/19530kcal/h		set	1	
2	Q1 /Q2 =45700/27455kcal/h		set	1	
3	Q1 /Q2 =32520/19530kcal/h		set	1	
4	Q1 /Q2 =112230/67440kcal/h		set	1	
5	벽걸이형랭온풍기	1800/1600kcal/h	대	1	
	△ 배풍기		대	14	
6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7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8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9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10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11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비 고
12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13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14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15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16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17	IN-LINE FAN		대	1	주물관-3m, 반도-4조 포함
18	IN-LINE FAN		대	1	
19	IN-LINE FAN		대	1	
	△ 레지스타	라인형	개	10	기류방향, 풍향조절
20	레지스타		개	1	
21	레지스타		개	1	
22	레지스타		개	1	
23	레지스타		개	1	
24	레지스타		개	1	
25	레지스타		개	1	
26	레지스타		개	1	
27	레지스타		개	1	
28	레지스타		개	1	
29	레지스타		개	1	
	△ 레지스타		개	14	방화, 풍향조절기능 기타표준부속품 일체
30	방화담바	FVD형	개	1	
31	방화담바		개	1	
32	방화담바		개	1	
33	방화담바		개	1	
34	방화담바		개	1	
35	방화담바		개	1	
36	방화담바		개	1	
37	방화담바		개	1	
38	방화담바		개	1	
39	방화담바		개	1	
40	방화담바		개	1	

1. 남북 적십자회담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41	방화담바		개	1	
42	방화담바		개	1	
43	방화담바		개	1	
44	온풍기	50KW	set	1	
45	온풍기	50KW	set	1	
46	온풍기	50KW	set	1	
47	아연도철판	두께:0.5T	t	1	
48	그라스울	24K * 24T	m'	1,500	
49	은박		m'	1,500	
50	은박테이프		토리	80	
51	전기방열기 N=2,5kW		대	2	기름방열기
52	동용접기	불대, 호스(50W), 산소, LPG	조	2	산소, LPG통-20Kg, 예비노즐, 계기
53	형강L45 * 45 * 2		t	3.5	
54	형강L65 * 65 * 5		t	2.5	
55	풍광용마킹재	캔버스	M	2,050	
56	풍광용고정철물		개	12,000	
57	확장볼트-M8		개	1,800	
58	볼트, 나트, 자리쇠-M8		Kg	1,800	
59	광명단	□ 300 * 400	Kg	100	
60	광명단희석재	□ 300 * 400	조	50	
61	대변기	CC-761	조	16	
62	소변기	U-332 (전자감응식)	조	10	
63	세면기	고급	개	6	카운다판포함
64	휴지걸이		조	16	
65	바닥도랍		개	7	H=200mm이하
66	싱크대	2구	개	1	
67	온습도계		조	55	
68	풍속계		대	1	1P/120~220V

5. 버스 및 승용차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버스	45인승	대	10	
2	렉스턴		대	6	은백색 3대, 검은색3대

〈제6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금강산 면회소 건설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공동보도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이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쌍방은 금강산면회소 건설을 3월 21일부터 진행하며, 면회소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기 필요한 인원의 연락체계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화상상봉을 확대 추진해나가기로 하고 남측은 북측에 화상상봉센터 건설 설비자재 및 물품구입 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재들의 제공을 3월말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2007년 3월 10일

금 강 산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금강산에서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맞게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올해 8.15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2차례 진행하며, 규모는 남북 각기 40가족씩 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제16차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며,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100명씩 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영상편지를 교환하기로 한다.

영상편지 교환대상은 이미 상봉한 바 있는 이산가족들로 하며 그 규모는 남과 북이 각기 20가족씩으로 한다.

쌍방은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협력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생사주소 확인문제를 이산가족문제에 포함시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적십자단체들이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당면하여 북측 적십자종합병원(평양) 현대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기로 한다.
6.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오는 10월말경에 금강산에서 가지기로 한다.
7.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4월 13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 적 십 자 사
사무총장 장 석 준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적십자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 성 익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의 적십자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대면상봉을 겨울철을 제외하고 각각 연간 400명 정도씩 한다.
- ② 남과 북은 2008년 6.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특별상봉을 진행하며 상봉대상은 이미 화상상봉을 진행한 대상자들 가운데 각각 100명 정도씩 하기로 한다.
- ③ 남과 북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1년에 160가족씩 하되 분기에 각각 40가족 정도씩 하기로 한다.
- ④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금강산 대면상봉시에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하여 가족 1명씩을 동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교환을 실시하기로 한다.
 - ① 남과 북은 2008년 새해를 맞으며 시범적으로 각각 2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산가족 문제의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오는 1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 금강산 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에 각기 필요한 인원들을 참가시키기로 한다.
5. 제10차 남북적십자회담은 금강산면회소가 준공된 다음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1월 30일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장 석 준

북 남 적 십 자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최 성 익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및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08년 설날을 계기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제작된 시범영상편지는 판문점을 통해 교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시범교환 이후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영상편지를 이산가족들의 소식 등을 담아 10분~20분정도 분량의 CD 또는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위하여 「영상편지 교환관련 제공 자재·장비 명세」에 합의하였다.

남측은 별첨한 영상편지 제작 비용과 장비 등을 빠른 시일내에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남측에서 제공한 장비들을 영상편지 제작사업에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8년 2월 5일

남 북 적 심 자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김 영 철

북 남 적 심 자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최 성 익

※ 남북 적십자단체 판문점 연락관 접촉(2008.2.5, 중감위회의실)을
통해 체결

〈별첨〉

영상편지 교환 관련 제공 자재·장비 명세

품 목	수량	비 고
디지털 촬영기	2대	받침대포함
디지털 사진기	2대	
편집기	2대	CD와 비디오테이프 편집
컬러프린터	2대	
중형버스	2대	25인승 (디젤유, 리무진급)
승용차	2대	
촬영용 조명기구	2조	
휴대용 발전기	2대	1Kw(휘발유)
물품 구입비용	\$3,000	
영상편지 제작비용	\$1,000	1가족 당
무선마이크	10대	
무선마이크 사용을 위한 기재	2조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서

남과 북은 2009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상봉규모는 남과 북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 ② 생사확인 의뢰서는 9월 1일에 쌍방이 각각 200명씩, 회보서는 9월 15일, 최종명단 100명은 9월 17일에 교환한다.
 - ③ 상봉장소는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개별상봉은 금강산호텔 등 기존시설에서 하기로 한다.
 - ④ 쌍방은 상봉의 원만한 보장을 위해 선발대사업을 상봉시작 5일전부터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09년 8월 28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김영철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최성익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10년 10월 1일 개성에서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6박 7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한다.
 - ① 상봉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 ②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측 방문단이 재남 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측 방문단이 재북 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한다.
 - ③ 생사확인 의뢰서는 10월 5일에 각각 200명씩, 회보서는 10월 18일에, 최종명단은 10월 20일에 교환한다.
 - ④ 이번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 호텔로 한다.
 - ⑤ 쌍방은 상봉시작 5일 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적십자회담을 진행한다.

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10월 1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북측 대표 김의도
수석대표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장 박용
대표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13년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 상봉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 ② 생사확인의회서는 8월 29일에 남과 북이 200명에서 250명 사이 각기 편리한 대로, 회보서는 9월 13일, 최종명단은 9월 16일에 교환한다.
 - ③ 상봉 형식과 방법 등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④ 쌍방은 상봉시작 5일 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2. 남과 북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진행하며,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40가족씩 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하면서 추석 계기 상봉이 끝난 직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3년 8월 23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북
적십자
수석대표
대행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남
적십자
용단
장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14년 2월 5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4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 ①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으로 하되 지난해 9월 쌍방이 교환한 명단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를 동반한다.
 - ② 상봉형식과 방법은 관례에 따르되 야외상봉은 기상 조건을 고려하여 실내상봉으로 진행한다.
 - ③ 단체상봉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에서 진행하고 남측 이산가족들의 숙소는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로 한다.
 - ④ 쌍방은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 ⑤ 북측은 상봉장 현지 점검을 위해 2월 7일부터 남측 시설점검단의 편의를 보장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한 후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며, 회담일정은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2014년 2월 5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북측 수석대표
이덕행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북측
이용장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07년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개성에서 제1차 남북기상협력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기상정보교환, 기상설비 현대화 및 남북간 기상인력 및 기술 교류 등 기상분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차기 회담을 2008년 2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18일
개 성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회의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환경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2008년에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전문가교류 등 그 운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 중 약솜공장 건립을 착수하기로 하고, 규모 및 운영방안 등 구체적 사항은 현장방문 기간중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전염병 통제를 위해 예방약 및 냉장운반 장치, 구급차, 진단시약, 치료제를 제공하며, 남북 사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전염병 퇴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업들과 관련한 실태 조사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에 맞게 북측 제약공장들이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원료 의약품을 제공하며 설비현대화와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와 약솜공장건설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2008년 1월 중 실시하며 사업 기간 중 필요한 기술 실무진의 현장방문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환경보호·산림분야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활동 공동연구사업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2008년 2월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황사를 비롯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8년 3/4분기안으로 평양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설치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자료교환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중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환경보호센터와 한반도 생물지 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2008년 4월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양묘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

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년 상반기 중 개성 경제협력회의 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7년 12월 21일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남측 위원장
김대국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북측 위원장
북리봉

Ⅲ. 사회문화 분야 합의서

1. 남북 체육회담
2. 남북 공동행사 회담
3.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 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선수단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합의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측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측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북측 올림픽위원회간 실무접촉이 2002년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이번 접촉에서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에 따른 제반 실무 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측은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 올림픽위원회 대표, 심판원을 포함하여 305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2. 북측은 8월 30일까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종목별 최종 선수단 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한다.
3. 북측 선수단은 9월 23일과 9월 27일 2차례 걸쳐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으로 남측에 온다. 경기 종료 후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4. 남측 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은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한다. 선수단 표지판은 「코리아」, 영어로는 「KOREA」로 하며, 선수단의 복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의 전례를 따른다.

5. 남북 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하며 시상식 때에는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연주한다. 또한 대회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 남과 북은 대표 또는 대표단을 각각 참가시킨다.
6. 북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취주악대와 예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355명 규모의 응원단을 파견한다. 북측 응원단은 <만경봉-92호>를 타고 원산을 출발하여 2002년 9월 28일 부산항으로 오며, 배에서 숙식하면서 대회행사와 경기응원에 참가한다.
7. 북측은 9월 5일 백두산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성화를 채화하고, 9월 6일 금강산에서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성화를 인계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10여명의 남측 인원이 백두산 현장에서 채화과정을 녹화 및 참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한다.
8. 남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해 체류기간 동안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9. 북측 선수단에 대해서는 남측 체류기간 동안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남측이 부담하며, 응원단의 남측 체류경비는 방문자측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남측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0. 남측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북측의 국기 게양 문제에 대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현장과 국제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11. 북측 선수단응원단은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며, 응원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다.
12.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국제전화 2회선, 남북직통전화 10회선을 보장한다.
13. 기타 북측 인원의 남측 체류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호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14. 추후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 등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를 진행한다.

2002년 8월 28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제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백 기 문

북 측 을 대 표 하 여
조선올림픽위원회
서기장 조 상 남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참가 관련 실무접촉 합의서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북측 대학생체육협회간 실무접촉이 2003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에 따르는 제반 실무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측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 임원, 심판진을 포함하여 200명 정도의 선수단과 310명 정도의 응원단을 파견하며 기자단은 19명으로 한다.
2. 북측은 7월 21일까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종목별 최종 선수단 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한다.
3. 북측 선수단은 8월 17일, 응원단은 8월 18일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으로 남측에 오며 남측 지역 이동시에는 남측이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경기종료 후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4. 남측 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은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 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한다. 선수단 표지판 및 복장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전례에 따른다.

5. 남측은 북측의 선수단, 응원단에 대해 숙소배정, 수송, 훈련과 경기, 응원활동, 신변안전 등 체류기간 동안의 편의를 보장하며, 북측은 경기대회 참가기간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6. 남북 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하며 시상식 때에는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를 연주한다. 또한 대회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 남과 북은 대표 또는 대표단을 각각 참가시킨다.
7.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대해 체류기간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하며, 북측 응원단 및 기자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8.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 한반도기는 남북 공동 입장 및 남북간의 경기시에 사용하며 남측은 북측의 국기 게양과 국호표기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규정과 국제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9.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에 각각 국제전화 1회선, 남북직통전화 5회선을 보장하며, 북측 기자단에 TV 전송 1회선, 사진전송 1회선, 남북직통전화 2회선과 국제전화 4회선, FAX 2회선을 제공한다.
10.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남측 체류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쌍방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호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11. 대회기간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기자단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쌍방은 현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12.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추후 제기되는 구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를 진행한다.

2003년 7월 6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 직 위 원 회
사 무 총 장 하 진 규

북 측 을 대 표 하 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학 생 체 육 협 회
부 위 원 장 장 정 남

〈아테네올림픽 남북공동입장을 위한 실무접촉〉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개·폐회식 남북공동입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2004년 6월 23일부터 24일 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제28회 올림픽경기대회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남북공동입장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선수단 호칭은 우리말로 '코리아'로, 영어로는 'KOREA'로 한다.
2. 선수단 단기는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 넣은 '한반도기'로 한다.
3. 선수단 공동입장시의 음악은 제27회 시드니올림픽에서 사용했던 '아리랑'으로 한다.
4. 공동입장 순서는 ①선수단 표지판 → ②단기 → ③남북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 ④남북선수단장 → ⑤남북 임원 → ⑥남북선수의 순서로 하며 공동기수는 남측은 여자, 북측은 남자로 한다.
5. 선수단 복장은 동일한 것으로 하되, 남자 상의는 청색, 하의는 베이지색, 여자 상의는 적색, 하의는 베이지색으로 한다.

2004년 6월 24일

남측 올림픽위원회를
대표하여
명예총무 박양천

북측 올림픽위원회를
대표하여
서기장 조상남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절차 합의서

남측 축구협회와 북측 축구협회 대표들은 2005년 7월 26일과 28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가지고 8.15를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남북 사이의 통일축구경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경기 명칭은 『8.15 남북통일축구경기』로 한다.
2. 북측 선수단의 남측 체류기간은 2005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한다.
3. 남자 축구경기는 8월 14일 『8.15 민족대축전』 개막식 때 하고, 여자 축구경기는 8월 16일에 하는 것으로 하며, 경기 응원은 공동으로 한다.
4. 선수단 명칭은 남측은 남측 선수단, 북측은 북측 선수단으로 한다.
5. 북측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외 지원인원 8명, 남자 선수단 27명, 여자 선수단 26명을 포함하여 총 63명으로 한다.
6. 북측 선수단의 왕래경로는 북측 비행기를 이용하여 서해직항로로 한다.
7. 선수 경기 복장에는 단일기와 함께 회사상표, 선수이름,

등번호를 새기며, 선수단복에는 단일기와 회사상표만 붙인다.

8. 경기의 주심과 선심은 남측 심판원들이 맡아서 한다.
9. 북측 선수단의 체류기간 필요한 모든 비용은 초청측인 남측이 부담한다.
10. 남측은 북측에 경기장과 평양 사이 직통전화 1회선, 경기장과 8.15 민족대축전 북측 상황실 사이 직통전화 1회선을 보장한다.
11. 남과 북의 축구협회는 앞으로 축구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2005년 7월 28일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조 중 연

8.15 북남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북측대표단
단 장 리 히 연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남북체육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2006년 6월 29일 개성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을 개최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것이 6.15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부합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단일팀 구성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앞으로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단일팀으로 참가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번 회담을 7월 중순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6년 6월 29일
개 성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8일 개성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관련 남북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참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응원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접촉은 2008년 1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개 성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관련 제2차 실무접촉〉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따라 2008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하여 참가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008년 2월 4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의 응원단 규모는 300명(지원인원 포함)으로 하며 베이징 올림픽경기대회 기간에 전후반기 남북 각기 150명씩으로 한다.
2. 남과 북의 응원단은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가하며 함께 응원하는 경기종목은 남과 북의 올림픽경기 참가 종목들이 확정된 다음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남과 북은 응원곡 선정, 응원복장, 응원도구, 응원 형식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협의·결정한다.
4. 남과 북의 올림픽위원회는 남북응원단 규모를 베이징 올림픽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각기 통보하며 개 폐막식을 비롯한 경기장 입장권예약 및 구입문제는 추후 협의·결정한다.
5. 남과 북은 남북응원단이 이용할 열차 및 그 편성 등 경의선 열차이용과 관련한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3차 실무접촉은 앞으로 편리한 시기에 개성(경제협력 협의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2008년 2월 4일

남 남 수	북 측 석 대 표	실 무 대 표	접 촉 대 표 우 상	북 남 측 단	남 측 단	실 무 대 장	접 촉 대 장	접 촉 대 장
-------------	-----------------------	------------------	----------------------------	------------------	-------------	------------------	------------------	------------------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5월 24일과 27일, 28일 개성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이하 대축전으로 함)에 쌍방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대표단 규모와 구성

쌍방은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대표를 파견하며 남측은 대표단에 자문단, 지원인원, 기자를 50명 더 포함시킨다.

2. 행사일정

- ①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6월 14일부터 6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구체적 세부 일정은 별지 첨부와 같이 한다.
- ② 남과 북은 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대표단 간에 공동행사를 가진다.

3. 왕래절차

- ① 남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남측 비행기를 이용하여 왕래는 서해 직항로로 한다.
- ② 남측은 당국대표단의 명단을 방문 10일전에 북측에 넘겨준다. 명단에는 성명, 성별, 직위, 소속을 밝히며 사진을 첨부한다.
- ③ 명단을 넘겨준 후 변동되는 사항은 판문점을 통하여 먼저 전화로 통지하고, 다음에 문서로 전달한다.

4. 편의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당국대표단의 숙식, 교통, 통신, 의료 등 기타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②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의 북측 지역 체류기간 판문점을 통하여 1일 1회의 행낭 운반을 보장한다.
- ③ 북측은 행사장(숙소 포함)에서 남측이 연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제공한다.
- ④ 쌍방은 각기 당국대표단의 활동 등 기록을 속기, 녹음, 녹화 등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⑤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지역에 체류하는 기간 북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5. 신변안전보장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당국대표단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신변안전보장각서를 방문 3일전에 판문점을 통하여 남측에 넘겨준다.
- ② 북측은 남측이 이번 방문의 성격에 맞게 휴대품을 소지하는 조건에서 그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

6. 당국 대표단의 표지 및 증명서

- ① 쌍방은 당국대표단의 일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를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② 기자는 기자완장을 착용한다.
- ③ 남측 당국대표단은 통일부 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다.

7. 기자의 취재활동

- ① 북측은 남측 당국대표단 기자들의 체류기간중 취재 활동을 보장한다.
- ② 쌍방은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

8. 기타 실무절차 문제

- ① 남측 당국대표단은 북측 지역 체류기간 이미 가설된 서울-평양간 직통전화와 함께 국제전화를 이용한다.
- ② 이 합의서 내용 이외에 행사전 합의가 필요한 실무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판문점을 통하여 협의, 확정한다.

- ③ 그밖에 제기되는 실무절차 문제는 남북당국간 왕래 관례에 따른다.

9. 합의서 발효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5월 28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측 대표 김 응 희
수석대표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측 대표 전 증 수
단장

<첨부>

행사일정

□ 6월 14일 (화요일)

- 16:30 남측 당국대표단 평양 도착
- 17:30 남측 당국대표단 숙소 도착
- 20:30 쌍방 당국대표단 개막식 참가
- 22:30 북측 당국대표단 주최 환영 만찬

□ 6월 15일 (수요일)

- 09:00~10:00 쌍방 당국대표단 민족통일대회 참가
- 10:00~11:00 쌍방 당국대표단 사진전시회 참가
- 11:00~12:30 쌍방 당국대표단 예술공연 관람
- 13:00~15:00 남측 당국대표단 주최 오찬
- 15:00~18:00 쌍방 당국대표단 공동행사
- 18:00~20:00 남측 당국대표단 별도 참관
(지하철도, 만수대창작사)
- 20:00~22:00 쌍방 당국대표단 6.15공동행사준비위원회
기념연회 참가

□ 6월 16일 (목요일)

- 09:00~10:00 쌍방 당국대표단 별도행사(고위인사예방)
- 10:00~12:00 남측 당국대표단 별도 참관(강서고구려
고분벽화, 동명왕릉, 단군릉)
- 12:00~14:00 북측 당국대표단 주최 오찬
- 15:00~18:00 쌍방 당국대표단 체육경기 및 폐막식 참가
- 21:00~23:00 남측 당국대표단 주최 답례 만찬

□ 6월 17일 (금요일)

- 10:00 남측 당국대표단 평양출발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5년 7월 22일 개성에서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민족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8.15 민족대축전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며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와 같은 급으로 한다.
2.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5년 8월 14일부터 8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3. 남과 북은 8.15 민족대축전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쌍방 당국 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진다.
4. 북측 당국대표단의 왕래수단은 북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왕래는 서해직항로로 한다.
5.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 들은 6.15 민족통일대축전때의 관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7월 22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측 대표 김웅희
수석대표 김웅희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측 대표 전종수
단장 전종수

남북당국 대표단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2006년 5월 23일 개성에서 쌍방 당국대표단의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이 참가하여 대축전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촉진시키는 민족공동의 행사로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이번 행사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해 8.15민족대축전 때와 같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정도의 당국대표단을 구성하며, 구체적인 명단은 행사 10일전에 교환한다.
3. 북측 당국대표단의 남측 지역 체류기간은 2006년 6월14일부터 6월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4. 쌍방 당국대표단은 대축전 기간 민간급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기본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의 상봉모임 등을 진행한다.

5.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지난 해 공동행사의 관례에 따른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5월 23일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김남중

북남 당국사이의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장 황단철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9월 7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에 관한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 안중근의사 순국 95년이 되는 올해에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자료 조사 및 확인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현지에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며,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안중근의사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확인, 봉환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중근의사를 기념하는 사업을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2005년 9월 7일

안중근의사유해공동발굴및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남측 대표 최완근
수석대표 최완근

안중근의사유해공동발굴및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북측 대표 장전종
단장 장전종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2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5년 11월 22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에 관한 제2차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양측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유해공동발굴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위치확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현지답사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조사 및 연구의 결과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순국기념일인 내년 3월 26일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판문점을 통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5년 11월 22일

개 성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0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집한 관련자료 및 공동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여순감옥구지 뒷산 일대”를 유해발굴 우선 대상지역으로 확정하였다.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유해남북공동발굴단”(이하 남북 공동발굴단)을 구성하여 우선 1단계로 4월 하순부터 약 1개월간 현지조사 및 유해 시·발굴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발굴장소 보존조치 등 중국측에 요청할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중국정부에 공동으로 협조요청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공동발굴단 구성 및 추진일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4월 10일

개 성

인도·사회문화분야 남북합의서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회담3과),
서울시 종로구 외룡공원길 20
(☎ 2076-1072)

인쇄처 : 웃고문화사

발행일 : 2015년 3월
